

2024년도 하반기 체험형 인턴 채용공고

국민의 주거행복을 책임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한민국 주택금융시장을 개척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7월 9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 모집분야(운영부점)별 중복지원은 불가(중복지원 발견 시 일괄 지원 취소 또는 불합격 처리)

1. 모집분야 및 인원

□ 체험형 인턴(일반전형) 총 165명

모집분야 (운영부점)	채용예정 인원	주 소
부산 본사	26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문현동)
유동화자산부(서울)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7, 사보이시티DMC(상암동)
ICT운영부(서울)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7, 사보이시티DMC(상암동)
서울중부지사	6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서울남부지사	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23, 큰길타워(역삼동)
서울북부지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05, KB금융노원플라자(상계동)
서울동부지사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326, 세신빌딩(도선동)
서울서부지사	7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3, 새싹타워(마곡동)
종합금융센터	14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인천지사	7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60, 현대해상부평사옥(부평동)
인천남부지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 삼성생명 구월동사옥 9층
경기중부지사	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관양동)
경기남부지사	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41, 서울보증보험빌딩(권선동)
경기북부지사	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66, 재능교육빌딩(백석동)
경기동부지사	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1, 기흥ICT밸리 SK V1(구갈동)
강원동부지사	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울곡로 2806, 한화생명빌딩(옥천동)
강원서부지사	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경춘로 2370, 한국교직원공제회 강원회관(온의동)
부산지사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59, 한화생명부산사옥(부전동)
서부산지사	4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76, 송원센터빌딩(괘법동)
대구지사	6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금융프라자(덕산동)
울산지사	4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97, 유안타증권빌딩(달동)
경북지사	2	경상북도 안동시 경북대로 367, 시온빌딩(옥동)
경남지사	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한국교직원공제회 경남회관(중앙동)

모집분야 (운영부점)	채용예정 인원	주 소
진주사무소	2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42, 슬래어빌딩(충무공동)
제주지사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33, KT&G빌딩(노형동)
광주지사	5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73(치평동)
대전지사	4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45, 신한중앙회(둔산동)
세종지사	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96, 밀레니엄빌딩(나성동)
충북지사	3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72, 삼성생명빌딩(사창동)
충남지사	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불당동)
전북지사	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29, KT빌딩(서신동)
전남지사	3	전라남도 순천시 이수로 331, 동신빌딩(조례동)
합 계	165	

※ 모집분야(운영부점)별 합격배수 운영 및 중복지원 불가(구분경쟁)

※ 공사 사정에 따라 인사이동을 통해 타 부점(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음

2. 지원자격

- 아래의 지원자격 제한 외 **성별, 학력, 전공 등 별도제한 없음**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89.7.24 이후 ~ '09.7.23 이전 출생자)
- 근무 예정지(운영부점)에서 **공사가 정한 입사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채용금지자**(「채용세칙」 제16조, 첨부 참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채용조건

- (**고용형태**) 기간제 근로자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근무(09:00 ~ 18:00)
- (**보수수준**) 월정액급여 **2,100천원(세전)***
 - * '24년도 근무분에 한하며, '25년도 임금인상 시 해당 내용에 따름
-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2025. 2. 28.(금)까지***
 - * 재계약 및 정규직 전환 불가
- (**우대사항**) 근무성적평정 우수자(우수인턴)는 차후 종합직 채용 시 우대하며, 평정 실시시기 및 방법, 세부 우대방안 등은 추후 결정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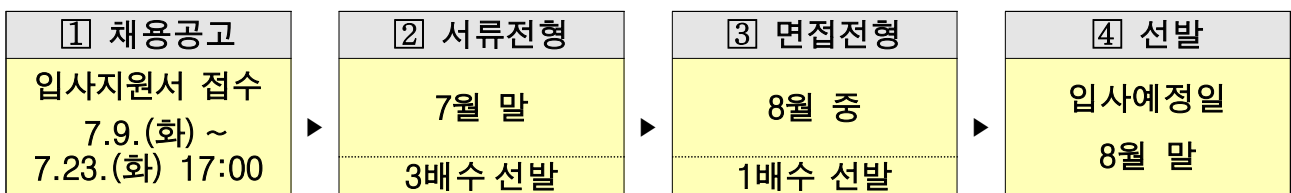
- **(담당업무)** 부점별 실무경험을 습득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업무 부여
 - 본사는 부서 운영 지원 등 사무보조 업무를, 지사는 유동화 예비 심사 및 고객응대 등 지사 업무 보조 직무를 부여
- **(기타사항)** 그 외 근로조건은 「사무직원 운영규정」을 따르되, 무급 휴가제도* 별도 운영 및 계약종료일까지 만근 시 수료증 발급
 - * ('24년 기준) 1일당 세전 월정액급여 80천원 차감

4. 입사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4. 7. 9.(화) ~ 7. 23.(화) 17:00
 - 마감시간(7.23(화) 17:00)이 임박하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
 - '임시저장' 상태로는 정상접수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최종제출' 처리**
- **(입사지원서)** 우리 공사 입사지원서 양식으로만 접수 가능
- **(접수방법)** 채용 통합홈페이지(<https://hf.recruitlab.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접수 등 불가)

5. 전형 절차 및 일정

□ 전형 절차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전형 일정(전형 절차별 일정, 장소는 대내외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구 분	일 정
■ 입사지원서 접수	7.9.(화) ~ 7.23.(화) 17:00
■ 서류전형 평가	7월 말
■ 면접전형 평가	8월 중, 비대면 화상면접 예정
■ 입사에정일	8월 말

6. 우대사항(각 전형별 가점 부여)

- ※ 가점 대상자(동점자 처리 시 우대하는 보훈대상자 포함)임에도 불구하고 **입사지원서에 우대사항을 기재(우대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음**
- ※ **합격 제한자(“8. 전형별 선발인원 등” 참조)는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우대사항 중복 시 가장 유리한 하나의 가점만을 부여**
- ※ 원점수 및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전형단계별 만점을 초과할 경우 만점으로 처리

□ 관련법령 등에 따라 각 전형별 **보훈대상자,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대**

구분	가점비율	가점 세부대상	
보훈대상자 ¹⁾	만점의 5% 또는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만점의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사회적 배려 대상자	수급자	만점의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수급자의 자녀
	한부모가족	만점의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	만점의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새터민	만점의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자립준비청년	만점의 5%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퇴소(또는 가정 위탁 보호조치 종료)한지 5년 이내인 자로서 보호 종료확인서 발급 가능한 자(※ 2019.7.23.이후(당일 포함) 퇴소 또는 보호조치 종료)

1) 보훈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에 따르며, 동법 제31조제3항에 의거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 단위(채용공고 상 운영부점)에서는 보훈 가점 미적용(단, 동점자 처리 시 우대)**

□ 우대사항은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면접 응시 불가)

* 증빙서류 발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요망 ☞ “7. 제출서류 등” 참조

※ 한부모가족 우대사항 관련 유의사항

- “본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를 각별히 유의하시어 사전 확인하실 것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자의 자녀이거나, 소득요건 등의 사유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으로 입사지원서에 기재하여 불합격 처리되는 사례 빈번하게 발생

7. 제출서류 등

- ※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단순 오기, 착오 등으로 인한 경우 제외) 합격을 취소하고, 입사 후 발견 시 징계 면직
- ※ 서류전형 합격자가 기한* 내 증빙서류 또는 추가정보 미제출 시(우대대상이 아님에도 우대대상으로 기재한 경우 포함) 증빙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면접전형 응시 불가)
 -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4일 내외 ☞ [증빙서류 사전 준비 요망](#)
- ※ 제출한 증빙서류 및 추가정보는 우대사항 확인, 면접위원 제척 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평가위원에게는 일체 제공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하실 것)
- ※ 우대사항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이후**('24.7.23.(화), 마감일 당일 포함)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우대사항 관련 서류 제출 시기 및 방법 (해당자에 한함)

- (제출시기·방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해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출*(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최종 합격 시 실물 제출)

* 기한 내 미제출 시 이후 전형단계 응시 제한

구 분	세부 구분	증빙 서류
보훈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장애인	장애인 (중증 포함)	①장애인증명서 1부 ②중증장애인확인서 1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다문화가족	①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③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 1부(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④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결혼이민자) 1부
	새터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1부

- (추가정보 입력)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위원 제척을 위한 공사 근무경력 및 「채용 성차별 해소방안(18.7월)」에 따라 면접단계 성차별 예방을 위한 채용 기록관리 목적으로 성별 등 정보 수집*

* 기한 내 미입력 시 이후 전형단계 응시 제한

- **(기타필요서류)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청년 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초본 등** 입사필요서류와 온라인으로 기 제출한 서류의 원본 등 제출 (최종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취소** (입사 후 발견 시 징계 면직하며, 단순 오기, 착오 등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
 - 기타 상세사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각 항 참고

8. 전형별 선발인원 등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입사지원서 기반 평가
 - 모집분야(운영부점)별 합격 배수 산정하며, 합격 제한자를 제외하고 합격자 결정
 - 원점수 및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모집분야(운영부점)별 지원자 수가 3배수에 미달할 경우 합격 제한자를 제외한 해당 모집분야 지원자 전원 서류전형 합격
- 면접전형
 - 「면접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공사 이해도, 직무능력, 의사표현력, 책임감·친화력 평가
 - **(지원자 참여형 면접질문 설계)** 지원자는 직무역량 및 직무수행태도 관련 평가위원에게 받고 싶은 희망질문을 사전에 제출하고, 평가위원은 이를 활용*
 - * 희망질문 2개 이내 제출받아 이중 일부만 활용 가능하며, 희망질문을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질문이 직무역량 및 직무수행태도에 부적합한 경우 미활용
 - 원점수 및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및 **예비 합격자***(합격자 및 합격 제한자를 제외한 응시자 전원)를 선발
 - * 모집분야(운영부점)별 합격자 및 예비 합격자 순위 부여

□ 합격 제한자

- 선발 전형별 합격 제한자는 이후 전형단계 응시를 제한하고 모든 전형 절차에서 가점 부여 및 (예비)합격자 대상에서 제외

〈합격 제한자 구분 및 내용〉

합격 제한자 구분	내 용
원점수가 선발 전형별 만점의 40% 미만인 자	· 원점수 : 각 전형단계별 평가위원의 점수를 단순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지원자격 미충족자	· “2. 지원자격” 을 충족하지 않은 자
미응시자, 중도포기자	· 서류전형 : 해당 없음 · 면접전형 : 정당한 사유 없이 화상면접 접속 중단될 경우 재입실 불허하되, 해당 시점까지의 면접 내용으로 평가
기한 내에 선발 전형별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추가정보 미입력	· 제출서류 또는 추가정보 : 전형별 합격자 발표 시 제출 및 입력을 요청 예정 ※ 각 선발전형 합격자 발표할 때마다 제출서류 또는 추가정보 입력 사항 안내 예정
불성실 기재자	· 직무능력기술서 또는 직무적성기술서의 1개 항목 이라도 아래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③ 기타 ①~②의 사유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모집분야별 중복 지원자	· 합격 제한자에 해당(입사 후 발견 시 합격 취소, 면직)

-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채용 절차는 응시자의 성별·신체조건·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거나 임직원의 가족이 우대되어 채용되지 않도록 하는 블라인드 평가방식을 준수

※ 공사는 공정한 채용제도 운영을 통하여 정부에서 주최하는 「공정채용·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4년 연속 공정채용 우수기관으로 선정

9.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Q&A를 이용(<https://hf.recruitlab.co.kr>)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발견 즉시 합격 취소

-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당사 「채용세칙」 제35조(피해자 구제방안)에 따라 피해자 구제조치 실시

구 분	피해자 구제 방안
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피해 발생단계가 최종전형인 경우 (예비)합격자 지위부여
채용절차가 종료된 경우	-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이후 동일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 응시기회 부여하고, 피해 발생단계가 최종전형인 경우 합격자 지위부여 또는 이후 동일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최종단계의 응시기회 1회 부여 -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채용비리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별도 채용절차를 실시

- 각 전형별 채용비리 관련 이의제기 절차 운영

- 동점자 처리기준

- 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보훈대상자 > 장애인 >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직전 전형단계 성적순***으로 선발

* 서류전형 동점자의 경우 서류전형 평가기준 상의 "직무능력" 평가항목 고득점 순

- 처리기준 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동점자 순위에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만 적용

- 모든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 입사지원서에 보훈대상자, 장애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 여부를 기재하지 않은 자는 동점자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전형별 (예비)합격자 결정 및 (예비)합격자의 순위 산정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동점자 처리 실시

- **(대체 합격) '24.11.30(당일 포함) 이내** 당해 채용공고 모집분야(운영부점) 별 최종 합격자(예비 합격자 포함)가 채용금자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거나, 합격 취소, 입사 포기,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 해당 모집분야(운영부점)의 예비 합격자를 순위에 따라 최종 합격자로 선발 (기한 경과 시 예비 합격자 지위 자동 소멸)

[대체 합격 선발 관련 유의사항]

- ▶ 예비 합격자가 입사 포기할 경우, 채용담당직원의 전자우편으로 「입사포기 확인서」(소정양식 별도 고지 예정)를 제출해야 함
- ▶ 공사가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로의 문자전송 및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대체 합격 선발 사실 및 대체 합격자 서류(인적정보서 등) 제출 또는 추가 정보 입력을 3회(영업일 기준 1일 1회)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최종 합격자 선발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예비 합격자를 대체 합격자로 선발함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고지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① 지원자가 오입력한 휴대전화 번호로 공사 또는 채용대행업체가 고지한 경우
 - ② 지원자가 오입력한 전자우편 주소로 공사 또는 채용대행업체가 고지한 경우
 - ③ 지원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공사 또는 채용대행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원자가 채용절차 등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
 - ④ 기타 ①~③의 사유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최종 합격 전 온라인 제출서류(제출한 추가정보 포함)는 우대사항의 사실여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평가위원회에 제공되지 않음

매 전형 참여 시 유효한 신분증* 원본 지참(신분증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①기간만료 전 여권, ②운전면허증, ③주민등록증, ④청소년증, ⑤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사진포함), ⑥주민등록번호(전체 13자리)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유효기간이 있는 신분증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이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 불가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채용금지자 및 합격 취소 관련 내규

□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채용세칙」 제23조(합격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
2. 채용비리 연루자
3.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제24조의 서류(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은 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주택금융공사 귀중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전형별 평가기준 (체험형 인턴)

□ 서류전형

대상	평가항목	평가기준
직무능력 기술서	직무능력	-지원분야의 지식, 경험, 경력 등이 있는가 -지식 및 경험의 업무 활용·응용 능력이 있는가 -성과를 창출하고 협업하는 과정에서 희생, 배려의 자세를 보였는가
직무적성 기술서	지원사유	-지원사유가 타당하고 구체적인가 -입사를 통해 기대하고 있는 개인적인 목표가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가 -입사에 대한 열의가 있는가
	조직문화 부합도	-지원자의 경험이 조직문화(협력·도전·포용)와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입사 후 조직문화의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가
	공사 관심도, 상품 이해도	-공사 상품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합당한가 -기여방안이 활용 가능하고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였는가

□ 면접전형

평가항목	평가기준
공사 이해도	-공사의 전반적인 업무 및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직무능력	-직무관련 교육, 경험, 경력 등이 있으며 공사에 활용 가능한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직무 관련 경력, 직무능력기술서 등 직무능력 심층 검증 -지원자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성과를 창출한 경험이 있는가 -성과 창출 과정에서 희생과 배려, 경청의 자세를 보였는가
의사표현력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가 -본인의 의사를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가
책임감·친화력	-성실성 및 책임감이 있는가 -화합 및 협조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가